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15.(수) 15: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5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3월 13일에 있었던 제1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17-13-07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가대상은 통신서비스별 6개 분야, 31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16년 말 기준으로 이동전화는 가입자 수 1,000만명 이상, 정부접수 민원비율이 가입자 대비 0.01% 이상인 사업자, 인터넷전화는 가입자 수 150만명 이상인 사업자,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이며, 정부접수 민원비율이 가입자 대비 0.01% 이상인 사업자, 알뜰폰사업자는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이며, 정부접수 민원비율이 가입자 대비 0.01% 이상인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업자는 연간 방문자 수 기준으로 1억 4,0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이며, 작년 ‘16년에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앱마켓 사업자는 앱 등록 누적 수가 10만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을 보고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대분류로 구성하고, 5개 대분류별 세부 평가지표는 아래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되 평가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세부 평가지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20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결격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및 활용입니다. 통신서비스별 평가항목을 계량화하여 5단계 등록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분야별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은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한 사업자 중 최고득점 1개 사업자에 대해 위원장상을 표창하고, 과징금 감경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가결과는 사업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항 안내를 통해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평가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5월까지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평가결과를 보고 및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법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이 금년에 하면 몇 번째가 되는 것이지요?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13년부터 했으니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2016년하고 이번에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포털과 앱마켓, 포털은 시범평가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평가가 금년에 된다는 것이고, 앱마켓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도 만들고 이런 시범평가를 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은 작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하나 변화가 있다면 과징금 감경기준에서 작년도에는 우수등급 이상이면 30%로만 했는데 '17년 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감경하고 우수 등급은 20% 이내로 차등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의 평가대상 사업자 중에 마이너한 것인데 포털 4개사 중에 다음(DAUM)이 맞습니까? 카카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카카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다음에서 다음카카오로 했다가 카카오로 아마 됐을 텐데,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니까 가볍게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고 하는 이 평가제도가 효과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매년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기보다는. 두 번째는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평가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경우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비교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가 됐든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비교·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과거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실제 실무적인 것을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선진국인 경우에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단체가 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 아니면 통신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와 서로 업무 협력이라든가 정보 교환이라든가 지식과 경험의 공유라든가 저는 이런 것이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가 너무 이런저런 특별한 환경 때문에 대개 특수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서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아니면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터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평가결과 및 활용 방안에 보면 과징금 감경이 있는데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우수 등급 받으면 20% 감경인데 굉장한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이내이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내에서...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실제로 30% 이내, 20% 이내, 종전에는 매우우수나 우수는 30% 이내였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실제 사례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감경해 줬습니까?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실제 사례는 SKB가 '16년도에 매우우수한 사업자로 해서 15%까지 감경받은 사례가 있고, 우수인 경우에는 저희가 5~10% 정도 해 줬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이 몇 개나 선정됩니까?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우수 사업자로 SKB가 한번 감경을 받았고 그다음에 LGU+가 3회, KT 1회, SKT 각 1회씩 감경받은 실례가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3페이지에 보면 평가대상 사업자 역시 이통3사 SKT, KT, LGU+와 그 계열사들이 다 대상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지만 정말 사회적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포털 4개 사업자와 앱마켓을 빼면 나머지는 다 SKT, KT LGU+와 그 계열사 대개 그런 것 같습니다. 알뜰폰 몇 개 빼고요. 포털과 앱마켓은 민원비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가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 CS센터로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62건, 카카오가 314건이고 구글과 네이트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고 앱마켓 사업자는 아직 정부 CS센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포털은 방문자 1억 4,000만 이상, 그다음 네이트 다음 순위가 어디입니까?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네이트 다음이 줌(ZUM)인데 줌(ZUM)은 1억 1,9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거기는 평가대상에서 빠진 것이지요?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예, 기준을 저희가 1억 4,000만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기준을 1억 4,000만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1억 이상이면 네이트도 포함되는 것인데 1억 4,000만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금년도 1억 4,000만명으로 잡은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네이트 4개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4개사를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4대 포털로 잡아서….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좋습니다. 평가작업을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잘해서 정책수단으로 활용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평가대상을 선정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각호에 따라 가입자 수나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비율은 여기에 보면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금지행위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 발생 정도, 시행령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한 것에 따라서 이용자 보호업무가 더 향상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런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라든지 또는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또는 민원비율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평가해 보고 그런 변화가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것도 고민해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실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포털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앱마켓이 시범사업자지만 또 내년이 되면 앱마켓도 정식 조사대상이 되고, 그러면 자꾸 조사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데는 대상이 너무 또 늘어나면 적절하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년 정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유예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논의가 됐던 적이 있지요?

○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오히려 그렇게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평가대상에서 한 해 또는 두 해 유예가 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진행해 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 보호업무를 더 향상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어서 저희가 제외한 사업자 없이 해당되는 사업자, 설사 지난해에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더라도 계속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여간 잘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도 전파가 되고 또 스스로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13-071~079)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배경을 보고드리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요금 등을 대행하는 결제대행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방통위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또한 행자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 관련 민원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13개 사업자로 결제대행사업자 12개, 민원제기된 삼일회계법인 1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결제대행사업자 전체 29개사 중 자본금 규모 65억을 초과하고 최근 조사를 받지 않은 이 <표>에서 기재한 12개 업체와 삼일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등 8개 사업자는 가맹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권한 부여 기준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 접근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자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4조제4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재방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기간은 1만원 초과 건은 5년, 1만원 이하 건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케이지이니시스는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이용자 약 239만명의 결제정보 총 6,200만건을 2004년 5월 31일부터 2016년 8월 19일 조사 당시까지 파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 파기하여야 하는데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2호 위반에 해당되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시정명령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일회계법인의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응시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마케팅 및 광고의 활용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시정명령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의견과 사무처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케이지모빌리언스 등 7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에스케이플래닛(주)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첫째, 가맹점에 제공되는 시스템상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중 4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 식별 요소가 제거되어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없고, 전화번호 일부는 개인식별 요소가 제거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무처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케이플래닛(주)은 결제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통신사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고,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정보 조회시스템’에도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번호 외에 고객번호, 통신사명, 거래일시, 청구금액, 상품명, 결제승인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맹점이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고객들의 완전한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맹점에 제공하는 조회시스템에 휴대전화번호 가운데 자리가 마스킹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쉽게 결합 가능한 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제출의견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2012년 9월에 발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상 ‘이용자 동의 사항 게재 및 동의 방법의 예’를 참조하여 오인이 있었다는 점, 회원가입 시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시험응시 이외의 사항은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피심인이 주장한 ‘회원가입 정보수집화면’은 회원가입을 위한 최초 화면(개인정보 처리방침) 이후의 두 번째 화면(회원가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초 화면에서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란에 미동의시 피심인이 주장하는 두 번째 회원 가입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회원 미가입시에는 자격증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등 8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인증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케이지이니시스는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 등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000만원씩

부과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8개 사업자 모두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각각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감경 사유를 검토한 결과, 8개 사업자 모두 가중,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중, 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삼일회계법인의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선택적 수집항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2012년 9월 당시가 그렇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명확히 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2014년 11월 12일에 제작·발표된 사항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행정처분 일정을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2015년 4월로 안내한 점, 그다음에 관련 조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본 건에 한 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벌칙사항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위반을 한 (주)케이지이니스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미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3월까지 시정조치(안)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이행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조사대상은 결제대행사와 그다음에 민원제기된 것 합쳐서 13개 사업자였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을 발견한 사업자는 10개 사업자가 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법사항을 발견한 사업자는 9개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처분예고한 것까지 합하면 결제대행사 12개 조사한 업체 중에 처분예고를 한 것은 10개사업자입니다. 그중에 사업자 소명을 받아서 3페이지에 보시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삼성SDS도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위법사항이 소명되어서 2개사는 여기 처분에서는 빠졌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자도 있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2개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결제대행사 모두 12개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이것이 소위 말하면 PG사들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조금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있어서 취약한 분야였는데 여기 보니까 12개사 중에 규모가 큰 회사들도 있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보면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은 경우 1개사, 그리고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5, 6개 회사가 되는데 그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나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에 대한 숙지도나 전문인력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조사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침입차단 시스템 설치 등 다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양호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PG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가맹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스케이플래닛 같은 경우 가맹점이 약 30개가 되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38개가 되며, 케이지모빌리언스는 가맹점이 약 3만개가 됩니다. 가맹점에서 접근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인증수단을 하고자 할 때는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동안 적용이 못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조사결과 법규 위반사항은 항목으로는 아주 적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PG사들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는데 지금 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3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접근통제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5개 회사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나 에스케이플래닛, 그리고 엔에치엔한국사이버결제는 규모가 꽤 큰 PG사들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취약요소가 많다고 보이는데 이런 이유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 유인설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이용자정책국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와 기타 직원이 같이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상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중심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용자정책국장도 말씀하셨듯이 가맹점들이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기를 아주 꺼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대행사를 바꾸는 선택을 자주 한다는 상황으로, 그래서 결제대행사 입장에서 가맹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용인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PG사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대규모 PG사가 있고 소규모 PG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 자본금 65억원 이상 초과한 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여기 조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규모가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첨으로 첨부한 피심인 일반현황을 보시면 퍼스트데이타코리아사는 '15년 말 매출액 규모가 853억원 정도 되어서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도 853억원 정도 되어서 그렇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말씀하신 일반현황을 보니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종업원 수 5,708명, 매출액 1조 1,400억원, 에스케이플래닛도 이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의 조사대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숫자거나 내지는 결제대행으로 인한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회사의 전체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결제대행사 입장에서 가맹점이 번거로움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번거롭게 계속 하면 다른 결제대행사로 옮겨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접근통제장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획조사를 거치면서 모든 결제대행사가 접근통제장치를 엄격하게 안전한 이용수단으로 다 채택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옮겨가도 다 똑같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 다른 것을 다 요구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결제대행업체들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한번 다시 점검해서 그렇게 편한 데로 옮겨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PG사가 전체 29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아니면 이용의 편의성 차원에서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전체 PG사들 대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법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문서를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생각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핀테크라고 할까, 결제대행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출액 대비 과태료 1,000만 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태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관들이 보고한 바로는 다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치는 그래도 지적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한 인증수단과 관련해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게 되면 더 보호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실태점검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호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개인정보 이외의 다른 것들, 자사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서 가입을 못 하게 한다, 서비스를 안 한다 이것은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 문턱을 더 낮추고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최소한의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14년에 방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대부분 홈페이지 등 시스템에서는 이미 마케팅 목적의 선택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그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여기는 과징금이 아니고 과태료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과태료이기 때문에?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는 한데 케이지이니스스의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제29조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아서 시정 명령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조치로는 지금 형벌밖에 없고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하면 저희가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그 사업자가 조사받고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케이지이니스스가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소명이 됐습니까?

○ 유인설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무관심해서 파기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입니까?

○ 유인설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예.

○ 최성준 위원장

- 결국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파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 유출되었을 때 피해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난 것은 다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이 유출됐던 것은, 확인한 결과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까?

○ 유인설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예, 특별히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현재 11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의제되어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반영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전 단계로서 신규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를 수행할 사업자 선정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과를 보고드리면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계획」을 금년 2월 1일 보고하였고,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참여 신청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 결과 2개 사업자가 신청했습니다. 국민카드 등 7개의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주)한국NFC 2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주)한국NFC는 사업계획서상 시범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며, 계획서상 시범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신용평가사나 신용카드사와 컨소시엄 구성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주)한국NFC가 제출한 시범서비스 개요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5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0일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

니다. 다음은 시범서비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목적과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심사기준)를 고려하여 본인확인업무 수행 가능성, 대체수단의 범용성, 대체수단의 편의성, 대체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체수단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사항에 대해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항목별 득점이 배점의 60%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사 7개사 및 (주)한국NFC의 시범서비스 실시 계획이 모든 심사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심사기준에 부합되어 신용카드사 7개 카드사를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한국NFC는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로 대체수단의 직접 제공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는 없는 사업자이나, 제안한 서비스 계획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한국NFC에 부과하는 선정 조건은 첫째, 선정심사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 신용카드사 등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된 자로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2가지 선정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심사 결과를 접수해 주시면 시범사업자 선정 결과를 금일 발표를 하고 시범서비스를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평가는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및 심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설명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면 한국NFC는 시범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정조건을 이행하면 그때 비로소 시범서비스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선정기준이 심사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70% 이상 득점하면 시범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조건을 붙인다 할지라도.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다른 타 항목이 우수하면 총점 70점 이상이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범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 중 하나가 본인확인업무 수행가능성입니다. 그런데 한국NFC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평가에서 어찌 보면 그러한 수단을 갖고 못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업무 수행가능성, 그 수행 역량에 있어서는 0점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분야가 이렇게 우수하다고 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NFC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출한 서비스 계획상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신용카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수행은 할 수 없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 시범서비스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업무가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부과하는 형태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본인확인업무 수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수를 주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설명하신 대로 신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성장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NFC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포럼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한 것이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고, 또 한국NF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이 높게 평가된 부분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히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다면 우리가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맞지요.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도 보고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서비스사업자이지만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취지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기업에게 기회를 준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고려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가장 최근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언제 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2011년에 신용평가사를 새로 지정하고 2012년 12월에 이통사 3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공인인증기관 5건을 지정의제를 했기 때문에 2012년이 마지막 지정이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동안에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이다, 휴대폰번호다, 지금 말씀하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한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새롭게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런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본인확인기관 지정할 때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과거에는 없었고, 과거에는 실제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에 제도화되면서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내지는 안전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했다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성과 편의성 두 가지를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저희가 발굴 내지는 보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신용카드사는 주로 신용카드 정보 아니면 앱카드 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 내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NFC도 똑같이 신용카드 내지는 앱카드 정보인데 그것을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이번 방통위가 새로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서비스 내지는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도 없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물론 안전성은 항상 기본으로 깔고 편의성·다양성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 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려면 저는 시범사업자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자 선정, 아까 선정조건이 붙은 시범사업자도 있지만 선정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되도록 하고, 결국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 이것이 실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기술인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하고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기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최윤정 과장님이 심사 과정에 다 관여하셨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한국NFC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나.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서비스 계획상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누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인지는 확정짓지 못해서 가지고 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3주 정도 그 정도 시간을 준다면 구성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